# 채무조정프로그램

#### 상품특징

• 연체중인 대출 등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 전환

### 대출신청자격

- 신용대출: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계좌를 보유한 고객으로, 개인신용평가시스템 (CSS) 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(잔액 X 의무상환비율(최대 20%))만큼을 상환한 고객
  - (1) 3개월(90일)이상 잔액 연체중인 신용대출
  - ② 1개월 이내 대출만기도래 신용대출 또는 대출만기가 경과된 신용대출 (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있는 고객)
- 담보대출: 1개월 이상 연체중인 주택담보대출 보유고객

## 대출금액

- 신용대출: 대출잔액 + 약정이자 + 연체이자 범위 내
- 담보대출: 채권최고액에서 기존계좌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산정
  - (1) 기존대출이 일시상환인 경우 : 약정이자 + 연체이자 범위 내
  - (2) 기존대출이 분할상환: 연체중인 분할상환 할부금(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포함) 범위 내

##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대출기간: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\* 거치기간 운용불가
- 상환방법: 원금균등분할상환

## 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

## 대출금리

- 신용대출: 연 13%(3개월 단위로 0.2%씩 최대 7.8% 대출금리 인하)\*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
- 담보대출: **연 9**%

## 조기상환수수료

• 면제

##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에관한 사항

- (1) 연체이자율: 최고 연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)
- \*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2.0%p
- 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- (2)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-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 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 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##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

•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## 대춬계약철회권

-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위법계약해지권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## 이용조건리스트 펼치기

## 담보

• 무보증

#### 부대비용

• 인지세: 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
대출금액	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~1억 원 이하	1억원 초과~10억 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(각각 3만5 천원)	15만원(각각 7만5 천원)	35만원(각각 17만 5천원)

•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## 대출상환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\*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.①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②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③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④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⑤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⑥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휴일 대출 상환: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# 기한연장관련 안내

• 해당없음

# 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

##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

•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 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. •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』에 따라 "연체정보 등"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##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• 2023.04.28~2024.12.31

##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

-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[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, 연체대출금 보유, 신용등급 낮음 등]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 은행 고객센터(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 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\*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: 전체서비스 → 고객센터 → 서식/약관/설명 서)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-1653-20호(2023.04.28)]

#### 필요서류

- 본인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
- 재직(사업) 또는 소득확인 서류 등

채무조정프로그램 4